

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(출자) 동의안

의안 번호	359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3월 30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11월 18일자로 위탁기관인 서울시·성남시와 「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·수탁 협약」을 체결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
- 나. 본 관리운영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를 설립(출자) 하고자,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출자 타당성 검토와 자치단체장 보고를 거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례선 트램 사업개요

- 주 관 : 서울시, 성남시
- 건설비 : 3,503억원 (LH공사 75%, SH공사 25% 분담)
- 사업규모
 - 총연장 5.4km_(본선)마천~북정(4.7km), _(지선)남위례(0.7km)
 - ※ 서울시 60.7% (3.28km) / 성남시 39.3% (2.12km)
 - 정거장 12개소(송파 7, 성남 5), 차량 10편성(5칸), 기지 1개소

< 위례선 트램 노선도 >



나. 운영개요

- 운영기간 : 개통일로부터 5년 ('26.12월 개통 예정)
- 운영비 : 연평균 240억원(추정) ※ 위탁기관 행정구역 거리비율 분담
- 영업시간 : 05:30 ~ 25:00(19시간 30분)
- 운행시격 : (본선) (첨두) 5~10분, (비첨두) 10~15분
(지선) (첨두) 15분, (비첨두) 20분
- 운임제도 :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※ 서울버스요금제와 동일
- 예상수요 : 일평균 최대 2.8만명('30년 기준) ※ 市도기본의 기본계획('20.9.)

다. 관리운영사업 위·수탁 협약 개요

- 협약주체 : (위탁)서울시·성남시 ↔ (수탁)서울교통공사
- 협약기간 :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('26.12월 개통 예정)
- 협약사무 : 여객운송 및 운임의 징수관리, 사업시설 유지보수 등
- 운영방식 : 트램 전문운영 자회사 설립 및 운영

라. 자회사 설립(출자) 타당성 검토결과

【타당성 검토 개요】

✓ (수행)지방공기업평가원 / (기간)'25.2월 ~ 8월 / (기준)지방공기업 설립기준

- (적정성) 자회사 설립의 필요성 및 법률적 타당성 확보
 - 한정된 위탁기간 및 공사의 노선과 비연계되는 별도의 노선 등 특수성 고려
 - 협약 조건 내 효율적,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자회사 설립·운영 필요
 - 트램은 관련 법령에서 궤도사업으로 분류 및 기준 충족
- (수지분석) 자회사 운영방식이 공사 직영 대비 5년간 160억원 수지 개선
 - 운송수익은 동일하나, 자회사 운영시 인건비 절감 구조로 수지 개선
- (재원조달) 자본금(20억원) 규모 및 재원 조달방법 적정
 - 출자한도 :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(24조원)의 100분의 10 이내
 - 규모산정 : 개통 전 사업비 분기 후불 지급에 따라 3.5개월 운영비 책정

마. 운영자회사 설립(안)

- 법인형태 : 상법상의 주식회사
 - 회 사 명 : (가칭) 위레트램운영주식회사
 - 본점소재지 :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(트램 차량기지 종합관리동)
 - 자 본 금 : 20억원(서울교통공사 100% 출자)
- 조직체계 : 사장, 1본부, 3처(7팀)
 - 상임이사 : 대표이사 및 본부장(*법인신고 시 결정)
 - 비 상 임 : 감사(당연직), 기타비상무이사(당연직)
 - 인 력 : 93명(임원 2명, 직원 91명) ※ 공사 지원인력 2명(한시정원)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공기업법 제54조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
 -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)
 -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

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
2.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
3. 재원 조달방법
4.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

④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: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
2.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: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
3.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: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별첨 :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·운영(안)_이사회 부의 안건 1부.

※ 작성자 : 교통실 도시철도과 고동오 (☎ 02-2133-4352)

서울교통공사 철도사업처 박기영 (☎ 02-6311-2270)